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9.11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/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18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
## 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< 건축 분야 >

### 건축계획

- 주 외장재에 해당하는 익스펜디드 메탈의 색상은 주변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 바람.
- 해당 사업은 대단지 규모의 장기간 계획으로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할 것으로 CM(건설사업관리) 및 사업단 구성시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.

## < 공통사항 >
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.
  - 가. 녹색건축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,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
  - 나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: 27.01%이상 적용  
(태양광(PV) 1,400kW, 지열 3,498.48kW)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

- 계속 -

2019.11.1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9.11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/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18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

## < 공통사항 >(계속)

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.
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
5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
  -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
 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
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19.11.1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